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교육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기초학력진로교육과장 등 3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는 한편, 교육부 하부조직 및 소속 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5. 00. ~ 5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3제4항제15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2.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·추진

제6조제8항제18호 중 “인재정책기획관”을 “인재정책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9항제5호를 삭제한다.

제8조제7항제19호를 삭제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총무과·기획연구과·연수과·정보지원”을 “총무과·기획연구과·연수과·디지털교육지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획연구과장·연수과장·정보지원과장”을 “기획연구과장·연수과장·디지털교육지원과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보지원과장”을 “디지털교육지원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실감형 콘텐츠 체험버스 및 체험교실 운영 지원

11. 장애학생 에듀테크 활용 교육 지원

12. 특수교육 정보화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

제21조제2항 중 “양성평등정책담당관, 기초학력진로교육과장, 학생건강정책과장, 특수교육정책과장 및 교육시설과장”을 “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및 학생건강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별표 1 사무운영서기보 10 다음에 “전문경력관 나군(비상계획 담당) 1”을 신설하고, “전문경력관 나군(예비군 담당) 1”를 삭제한다.

별표 3 중 행정주사 “2”를 “3”으로 하고, 사서주사 “1”을 “0”으로 하며, 행정주사보 “4”를 “3”으로 하고, 행정주사보 3 다음에 “사서주사보 1”를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의3(디지털교육기획관) ① ~ ③ (생 략) ④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은 다 음 사항에 관하여 디지털교육기 획관을 보좌한다. 1. ~ 14. (생 략) <u>15.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 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·추진</u> <u>16. ~ 18. (생 략)</u> ⑤ (생 략) ⑥ 교육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 항에 관하여 디지털교육기획관 을 보좌한다. 1. ~ 21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3조의3(디지털교육기획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. 1. ~ 14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15. ~ 17. (현행 제16호부터 제 18호까지와 같음) ⑤ (현행과 같음) ⑥ ----- ----- -----. 1. ~ 21. (현행과 같음) <u>22.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 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·추진</u>
제6조(인재정책실) ① ~ ⑦ (생 략) ⑧ 인재양성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. 1. ~ 17. (생 략) 18. 그 밖에 <u>인재정책기획관</u>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	제6조(인재정책실) ① ~ ⑦ (현행 과 같음) ⑧ ----- ----- -----. 1. ~ 17. (현행과 같음) 18. ----- <u>인재정책실</u> ----- -----

는 사항

⑨ ~ ⑮ (생략)

⑮ 고등직업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~ 4. (생략)

5. 공영형 전문대학 육성정책의 수립 및 추진

6. ~ 27. (생략)

제8조(대학규제혁신국) ① ~ ⑥ (생략)

⑦ 대학경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~ 18. (생략)

19.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및 운영 지원

제13조(국립특수교육원) ① 국립특수교육원에 총무과·기획연구과·연수과·정보지원과 및 장애인평생교육과를 둔다.

② 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, 기획연구과장·연수과장·정보지원과장 및 장애인평생교육과장은 장학관·교육연구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③ ~ ⑤ (생략)

⑨ ~ ⑮ (현행과 같음)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6. ~ 27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대학규제혁신국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
-----.

1. ~ 18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제13조(국립특수교육원) ① -----
----- 총무과·기획연구과·연수과·디지털교육지원-----
-----.

② -----
----- 기획연구과장·연수과장·디지털교육지원과장 -----

---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<u>정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u> 1. 삭 제 2. ~ 8. (생 략) 9. 삭 제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⑦ (생 략) 제21조(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) ① (생 략) ②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4조제5항에 따라 <u>양성평등정책담당관, 기초학력진로교육과장, 학생건강정책과장, 특수교육정책과장 및 교육시설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</u>	⑥ <u>디지털교육지원과장-----</u> -----. 2. ~ 8. (현행과 같음) 10. <u>실감형 콘텐츠 체험버스 및 체험교실 운영 지원</u> 11. <u>장애학생 에듀테크 활용 교육 지원</u> 12. <u>특수교육 정보화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</u> ⑦ (현행과 같음) 제21조(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 <u>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및 학생건강정책과장-----</u> ----- ----- -----.
--	---

신·구정원대비표

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1]

교육부 공무원 정원표(제18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<u>전문경력관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<u>나군(비상계획 담당)</u>			
<u>전문경력관 나군(예비군 담당)</u>	<u>1</u>	<u><삭 제></u>	-1
·	·	·	
·	·	·	

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3]

국립특수교육원 공무원 정원표(제19조제2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	<u>2</u>	<u>3</u>	+1
사서주사	<u>1</u>	<u>0</u>	-1
·	·	·	
행정주사보	<u>4</u>	<u>3</u>	-1
<u>사서주사보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·	·	·	
·	·	·	